

의안번호	제 46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12. / .

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 11. .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보건소조례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법규명과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사천시보건소조례중 “보건소법”을 “지역보건법”으로 개정
- 보건지소 관장업무를 추가함.

3. 법적근거

- 지역보건법(법률 제5101호 '95. 12. 29)
- 지역보건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5119호 '96. 7. 13)
- 지역보건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45호 '97. 2. 14)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”
를 “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”
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보건소법 제6조”를 “지역보건법 제9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제1호내지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3.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
4. 결핵, 나병, 성병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
5.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
6. 국민건강증진, 보건교육,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
7. 노인보건사업
8.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
9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
사항
10.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 - - - <u>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
<p>제5조(업무) ①<u>보건소는보건소법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p>②제1호내지제5호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6.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</p>	<p>제5조(업무) ① - - - - <u>지역보건법제9조</u> - - - - -</p> <p>②제1호내지제5호(현행과 같음)</p> <p>6.<u>국민건강증진,보건교육,구강보건 및 영양개선</u></p> <p>7.<u>노인보건사업</u></p> <p>8.<u>정신보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<u>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- - - - -</p>